

제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가단529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9,048,782원 및 그 중 138,876,282원에 대하여 2023. 11. 9.부터 2024. 1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3.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제주지방법원 2023. 9. 4. 접수 제647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강란주

별지